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나.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3. 제안이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학사운영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제정되었으나 설치주체인 도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애 이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4. 주요골자

- 학사설치의 목적, 위치, 기능을 규정
- 학사운영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 운영
-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을 도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사시설을 목적의 사용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학사운영 상황을 도지사가 검사 또는 감독 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학사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충북학사는 충북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입사케하여 수학에 따른 숙식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되로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설치주체인 도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이의 설치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저 하는것으로서 충청북도 학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만순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 박만순위원 충북학사가 요즈음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과 본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4조에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그런데 여기는 전부 도지사가 다 하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청이 공익법인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이 된다 이랬는데 왜 조례안에는 전부가 다 도지사가 다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안보다는 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상위인데 왜 대체되는 규정이 있느냐 또 그동안의 이렇게 보면은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도비 출연금 1억원과 그동안에 들어간 부지매입비 23억6천만원하고 건물 신축비 25억원의 황창익 충북은행장이 도서구입비 300만원 기탁한 것 하고